

#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거짓으로 신고(사망자 전입신고 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 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새로 사는 곳 (전입지, 국외이주지)	구 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전입주소가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층·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주택명칭 층 호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input type="checkbox"/>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input type="checkbox"/>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input type="checkbox"/>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		<input type="checkbox"/> 교 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국외이주 사유 ※주된 1가지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가족체재, <input type="checkbox"/> 유학, <input type="checkbox"/> 취업, <input type="checkbox"/> 투자, <input type="checkbox"/> 상용(상사원), <input type="checkbox"/> 공무,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세한 내용)			

전에 살던 곳 (전출지, 말소지, 거주불명 등록지)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세대 전부 전출 <input type="checkbox"/>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전출 <input type="checkbox"/>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 함하여 세대 일부가 전출 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행정상관리) 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 정 리	비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에만 해당)
------	-----------------------------

※ 기존 위임장 및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2쪽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시·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한 경우, 지역번호판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30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
  - 이륜자동차: 30일 이내 시·군·구(읍·면·동)에 변경등록 신고
  - 건설기계: 30일 이내 시·도 변경등록 신고
-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전입 및 국외이주 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제공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의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 또는 국외이주 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의 "주민등록증 정리"란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기재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단,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함

**( ) 신고서 접수증 <세대 전부 전입, 세대 일부 전입>**

\* 신고서 및 학력아동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